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18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473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18880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25.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9.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D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319,825,918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594,196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796,303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10630호로 구상금 321,623,811원(= 319,825,918원 + 2,594,196원 - 796,30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623,811원 및 그 중 319,825,918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19. 4. 10.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의 아버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망인의 처이자 B의 어머니이다), B, F, G(F, G은 망인의 자녀이다)이 있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0. 8. 18.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0.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다만,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2018. 7. 25.로 기재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공동의 재산이었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물려준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소유의 재산이라 할 것인데, 단지 그 형식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상속인인 B의 상속지분은 2/9인바,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포기된 B의 상속지분 2/9를 피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25.자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 21필지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 적 : 74.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대 2933.10㎡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473.7㎡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86.5㎡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15.8㎡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6.6㎡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6㎡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7㎡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4㎡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483.60㎡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3182.5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483600분의 26046

- 현재 피고 소유 -

1)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일자는 2020. 8. 18.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일자가 2018. 7. 25.이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체결일자를 2018. 7. 25.로 특정한다.